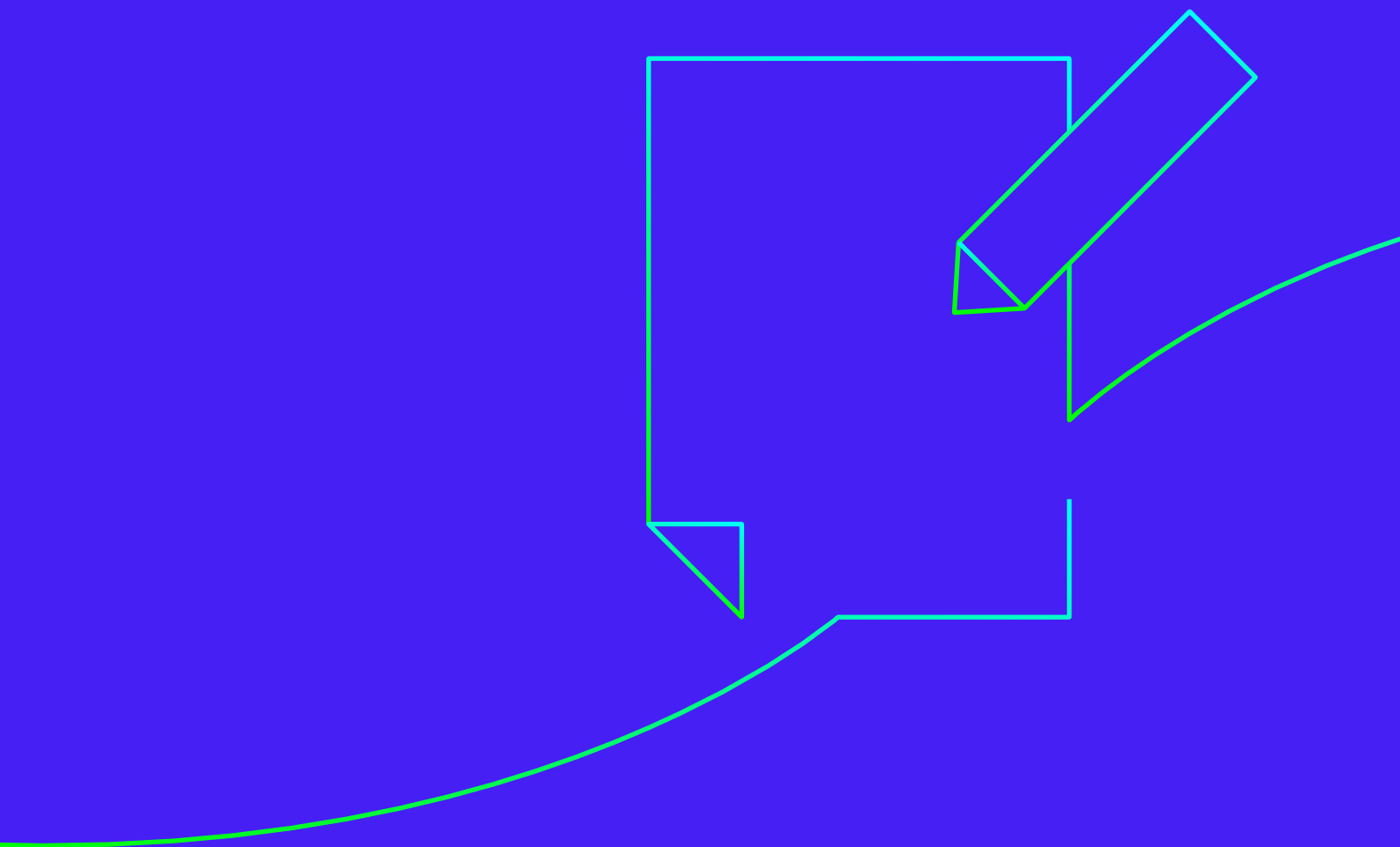


이사회 규정

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권한)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
제2장 구성

제4조(구성)

이사회는 등기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
제5조(의장)

- 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 이사회 의장이 별도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가 정한 대표이사(사장)가 이사회의 의장직을 수행한다.

- ② 이사회 의장이 의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이사회 의장이 지정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회 의장이 지정한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직무를 대행할 이사를 정한다.

제3장 회의

제6조(종류)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홀수월 셋째주 수요일 또는 이사회에서 달리 정하는 날에 개최한다.
-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7조(소집권자)

- ①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, 대표이사(사장)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소집한다. 그러나 이사회 소집권자의 유고 시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이사는 이사회 소집권자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이사회 소집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8조(소집절차)

-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일전에 목적, 일시, 장소를 서면, 구두, 전화, Fax, E-mail 및 기타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.

제9조(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는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 다만, 이사회 결의사항 중 상법 제397조의2(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) 및 제398조(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)에 따라 규정된 제10조 제1항 제4호의 (1) 및 (1)-2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10조(부의사항)

-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회사에 관한 다음의 각 호 사항으로 한다. 자회사에 관한 사항은 ①-2에서 규정한다.

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
- (1) 주주총회의 소집
- (1)-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
- (2) 영업보고서의 승인
- (3) 재무제표의 승인
- (4) 정관의 변경
- (5) 자본의 감소
- (6) 회사의 해산, 합병, 분할합병, 회사의 계속
- (7) 주식의 소각

- (8)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
- (9)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,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
- (10) 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(11) 주식의 액면미달발행
- (12)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
- (13) 현금,주식,현물배당 결정
- (14)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
- (15) 이사의 보수
- (16) 회사의 최대주주(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)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
- (17) 법정준비금의 감액
- (18)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

2. 경영에 관한 사항

- (1)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
- (2)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과 동 계획의 중요한 변경
- (3) 신규사업 또는 신규 제품군이나 신규 브랜드의 개발
- (4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(5) 삭제 <2023.11.14.>
- (6) 삭제 <2023.11.14.>
- (7) 공동대표의 결정

- (8)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
- (9)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- (10)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.
- (11)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
- (12)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
- (13) 지점, 공장, 사무소, 사업장의 설치·이전 또는 폐지
- (14)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의 변동, 신규법인 설립
- (15) 간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
- (16)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
- (17) 회사의 중대한 영업 및 생산활동에 관한 사항 (영업정지, 거래중단, 제품 수거·파기, 생산중단, 단일판매·공급 계약 등)
- (18) 중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
 - 가. 정관
 - 나. 이사회 규정
 - 다. 내부회계관리규정 제·개정결의
 - 라.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
 - 마. 위임전결규정
 - 바. 취업규칙
 - 사. 상기 각호의 규정의 개폐시 법령, 단순 자구수정, 정관 등 상위 규정의 변경에 따라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(19) 기타 회사의 중요한 경영 관련 사항

3. 재무에 관한 사항

- (1) 중요한 투자에 관한 사항
- (2) 중요한 계약의 체결

- (3)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
- (4) 결손의 처분
- (5)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
- (6) 타법인에 대한 출자·출자지분의 처분 및 기 결의된 취득액 또는 처분액에 대한 변경
- (7) 출자 비상장 법인 존폐 관련
- (8) 신주의 발행
- (9)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
- (10) 준비금의 자본전입
- (11) 전환사채의 발행
- (12)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- (13) 다액의 자금도입, 차입 및 보증행위, 통상적인 거래의 범위를 벗어난 어음의 발행
- (14)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, 질권 기타 담보권의 설정
- (15)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
- (16) 자기주식의 소각
- (17) 주식의 분할·병합
- (18) 주식의 액면·무액면 전환
- (19) 해외 증시 상장
- (20) 단기 차입금 증가
- (21) 채무 인수·면제, 담보 제공·채무 보증
- (22) 금전의 가지급·선금·대여
- (23) 피보증 법인 존폐 관련

4. 이사 등에 관한 사항

- (1) 상법 제398조에 해당하는 이사 등과 회사 간 거래의 승인
- (1)-2 상법 제397조의 2에 해당하는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
- (2) 상법 제397조에 해당하는 이사의 경업/겸직 승인

5. 기 타

- (1) 중요한 소송의 제기
- (2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
- (3)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(4) 기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

①-2 이사회에 부의할 자회사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.

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
- (1) 정관의 변경
- (2) 자본의 감소
- (3) 회사의 해산, 합병, 분할합병, 회사의 계속
- (4) 주식의 소각
- (5)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
- (6)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,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
- (7) 기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의안

2. 경영에 관한 사항

- (1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(2) 지점, 공장, 사무소, 사업장의 설치·이전 또는 폐지
- (3)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의 변동, 신규법인 설립
- (4) 간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
- (5)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
- (6) 회사의 중대한 영업 및 생산활동에 관한 사항 (영업정지, 거래중단, 제품 수거·파기, 생산 중단, 단일판매·공급 계약 등)

3. 재무에 관한 사항

제10조 제1항 제3호 재무에 관한 사항 중 건당 50억원 또는 연간 누계 기준 100억원을 초과하는 건

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회사와 그 자회사에 관한 다음의 사항으로 한다.

1.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2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③ 대표이사는 회사와 그 자회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1. 분기별 사업실적 및 경영성과에 대하여 다음 분기에 첫 번째 개최되는 이사회에 보고
2. 연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현황에 대하여 다음 년도 개최되는 이사회에 보고
3.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 이사 요청사항

④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 및 본 규정 제11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써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 및 임원에게 그 결정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전

결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.

제11조(이사회 내 위원회)

-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 - 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 - 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- 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- 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- ③ 위원회는 1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- 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12조(관계인의 출석)

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 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13조(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)

-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,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- ③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내부회계관리제도관련 업무를 관리 감독한다.

1.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조직구조, 보고체계 및 성과평가 연계방식 검토
2. 회사 내 재무보고 및 부정위험과 관련된 제반 위험에 대한 이해와 검토
3.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경영진의 중요한 조치사항 검토
4.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변화 사항에 대한 경영진의 조치사항 검토
5.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결과 및 개선조치에 대한 확인 등

제14조(의사록)

-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-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9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12월 0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04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09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06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0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5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.